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-1173호

**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
공람 공고**

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며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9일

강 북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18. 11. 9. ~ 2018. 12. 10. (32일간)

나. 공람장소 : 강북구청 주택과(☎02-901-6822)

다. 의견제출 :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

나. 공람내용 :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

다. 공지사항 : 본 공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

※ 다만, 정비계획 변경(안)은 강북구의회 의견청취,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1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경	변경후	
-	강북구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	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	59,489.9	-	59,489.9	

2. 정비계획의 변경

가.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(변경)

위 치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59,489.9	-	59,489.9	10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59,194.6	감) 59,194.6	0	0	
제3종일반주거지역	295.3	감) 295.3	0	0	
제2종일반주거지역	0	증) 59,489.9	59,489.9	100.0	

-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
-	강북구 미아동 797-11번지 등	제3종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95.30	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

나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: 변경없음

구분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미관 지구	조망가로	수유동679~ 길음동107	144,000 [1,335]	4,820 [89]	양축15	서고시73 (1982.02)	[]는 구역내 해당사항임

다.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 (변경)

결정 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치	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점	종점		
기정	중로	3	55	12~15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,100 (138)주	미아동 778-21	미아동 123-1	건고시 738호 (‘63.12.24)	도로3m 확폭
기정	중로	3	(1)	13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35	미아동 791-560	미아동 791-775	건고시 3호 (‘63.01.18)	도로3m 확폭
기정	중로	3	(2)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7	미아동 791-350	미아동 791-414	토지구획정리 1969.11.03	도로8m 확폭
기정	중로	3	(3)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8	미아동 233-46	미아동 233-1	토지구획정리 1969.11.03	도로6m 확폭
기정	소로	1	(1)	1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42	미아동 762-1	미아동 791-775	서고시 제2010-183호 (2010.05.20.)	도로3m 확폭
기정	소로	3	(4)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9	미아동 762-66	미아동 762-18	서고시 제2010-183호 (2010.05.20.)	도로3m 확폭
기정	소로	1	(4)	10~2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51	미아동 226-49	미아동 234-46	토지구획정리 1969.11.03	일부구간 폭원20m
신설	소로	3	(5)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53	미아동 791-445	미아동 791-436	-	

※ ()안의 도로번호는 임시 부여번호

※ ()⁺ : 구역내 도로연장임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 고
-	소로3-(5)	- 신설 - 폭원 = 6m - 연장 = 53m	미아11구역 사업지역에 따른 맹지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	

2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결정구분	구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	최초 결정일	비 고	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 점	종 점	높 이			
기정	소로	1	(2)	1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47	미아동 791-775	미아동 791-652	지하2m~ 지상부	도시계획시설	서고시 제2010-183호 (2010.5.20)	
										지하2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	
기정	소로	1	(3)	1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73	미아동 791-685	미아동 762-1	지하2m~ 지상부	도시계획시설	서고시 제2010-183호 (2010.5.20)	
										지하2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	

3)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조서 (변경)

결정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의 종류	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명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①	공원	어린이 공원	강북구 미아동 233-38번지 일대	1,873.7	감) 150.2	1,723.5	
변경	①	공원	소공원	강북구 미아동 762-121번지 일대	1,127.0	증) 513.3	1,640.3	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 고
①	어린이공원	• 면적 감소 - 150.2㎡ 감소	보차혼용통로 설치를 위한 어린이공원 면적 일부 감소	
①	소공원	• 면적 증가 - 513.3㎡ 추가 확보	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의한 법적의무면적 확보를 위한 공원증가	

4)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결정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공공청사	강북구 미아동 762-19번지 일대	891.0	

라. 건축법상 도로 (변경없음)

결정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형태	연장 (m)	위 치	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점	종점		
기정	소로	3	-	6(2~3)	국지 도로	건축법상 도로	38	미아동 762-67	미아동 762-28	서고시 제2010-183호 (2010.05.20)	구역내 확폭 (87㎡)

마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59,489.90	-	59,489.9	100.00	
정비기반 시설	소 계	9,619.8	증) 682.3	10,302.1	17.32	
	도 로	6,619.1	증) 319.2	6,938.3	11.66	건축법상 도로확폭 87㎡ 포함
	어린이공원	1,873.7	감) 150.2	1,723.5	2.90	
	소공원	1,127.0	증) 513.3	1,640.3	2.76	
	주민센터	(1,047.75)	증) (315.97)	(1,363.72)	-	건축물 기부채납
획 지	소 계	49,870.1	감) 682.3	49,187.8	82.68	
	획 지 1	26,578.2	감) 169.0	26,409.2	44.39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획 지 2	12,766.2	증) 974.0	13,740.2	23.10	
	획 지 3	4,182.9	-	4,182.9	7.03	
	획 지 4	1,191.0	감) 513.3	677.7	1.14	
	획 지 5	1,625.6	-	1,625.6	2.73	종교시설
	획 지 6	1,018.0	감) 1,018.0	0.00	-	
	획 지 7	445.2	-	445.2	0.75	
	획 지 8	543.0	-	543.0	0.91	
	획 지 9	629.0	증) 44.0	673.0	1.13	
	획 지 10	891.0	-	891.0	1.50	

바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(변경)

시설 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			비고
			기정			변경			
			법정기준	면적		법정기준	면적		
부대 복리 시설	경로당	미아동 791-364 번지 일대	40㎡+(1,017-150)×0.1㎡	126.70㎡ 이상	127.03	40㎡+(1,076-150)×0.1㎡	132.60㎡ 이상	135.03	획지1
	보육시설		500세대이상, 40인이상 (1인당 4.29㎡)	171.6㎡ 이상	308.70	500세대이상, 40인이상 (1인당 4.29㎡)	171.60㎡ 이상	308.69	획지1
	주민공동 시설		50㎡+(1,017-300)×0.1㎡	121.7㎡ 이상	483.90	50㎡+(1,076-300)×0.1㎡	127.60㎡ 이상	483.90	획지1
					219.05			219.05	획지2
					0.00			-	획지3
	도서관		300세대 이상 33㎡ 이상	33㎡ 이상	108.00	300세대 이상 33㎡ 이상	33.00㎡ 이상	108.00	획지1
	어린이 놀이터		300㎡+(1,017-100)×1㎡	1,217㎡ 이상	1,220.78	300㎡+(1,076-100)×1㎡	1,267.00㎡ 이상	960.69	획지1
								315.09	획지2
	관리 사무소		10㎡+(1,017-50)×0.05㎡	58.35㎡ 이상	375.36	10㎡+(1,076-50)×0.05㎡	61.30㎡ 이상	375.36	획지1
	근린생활 시설		6㎡×1,017	6,102.00 미만	512.80	6㎡×1,076	6,456.00㎡ 미만	511.17	획지1
					0.00			-	획지2
					1,225.41			1,221.72	획지3
3,244.16		1,281.71			획지4				

사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(변경)

결정 구분	구역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등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변경	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59,489.9	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	387	1	3	383	-	

2) 건축시설계획 (변경)

【기정】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획지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층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북구 미아 제3 주택 재개발 정비구 역		49,870.10	획지1	26,578.2	791-3253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27.09 이하	73m이하 (평균 18층 이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2	12,766.2	791-664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3	4,182.9	762-10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4	1,191	762-63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5	1,625.6	762-62번지 일대	종교시설	60이하	227.09 이하	12층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6	1,018	791-777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7	445.2	226-74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8	543	762-18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9	629	791-687번지 일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 지 10	891	762-19번지 일대	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	60이하	227.09 이하	12층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주택공급계획 : 1,017세대 ▶ 건립규모 <table><thead><tr><th>건 립 규 모</th><th>기 준</th><th>세 대 수</th><th>비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계</td><td>-</td><td>1,017 세대 (100.0%)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이하</td><td>건립세대수 80%이상</td><td>578 세대 (56.8%) : A</td><td>증가용적률 제외분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초과</td><td>건립세대수 20%미만</td><td>63 세대 (6.2%) : B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60㎡이하</td><td>증가용적률 100%</td><td>376 세대(37.0%) : C</td><td>증가용적률 21.00%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 최소 세대수(D) = (증가용적률 × 대지면적) ÷ {1세대당(전용+공용) 면적} = D < C = (0.2100 × 44,718.3㎡) ÷ (82.53㎡) = 113.79세대 < 376세대 : 요건충족 (최소세대수) (증가용적률분) ▶ 임대주택 건설계획 - 총세대수의 15% 이상 - 153세대(15.04%) <table><thead><tr><th>건립규모</th><th>기준</th><th>세대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40㎡ 이하</td><td>임대주택의 40~50%</td><td>69세대(45.1%)</td></tr><tr><td>40㎡ 초과 ~ 50㎡ 이하</td><td>임대주택의 40~50%</td><td>68세대(44.4%)</td></tr><tr><td>50㎡ 초과 ~ 60㎡ 이하</td><td>임대주택의 10~20%</td><td>16세대(10.5%)</td></tr><tr><td>계</td><td></td><td>153세대(100.0%)</td></tr></tbody></table>										건 립 규 모	기 준	세 대 수	비고	계	-	1,017 세대 (100.0%)		전용면적 85㎡이하	건립세대수 80%이상	578 세대 (56.8%) : A	증가용적률 제외분	전용면적 85㎡초과	건립세대수 20%미만	63 세대 (6.2%) : B		전용면적 60㎡이하	증가용적률 100%	376 세대(37.0%) : C	증가용적률 21.00%	건립규모	기준	세대수	40㎡ 이하	임대주택의 40~50%	69세대(45.1%)	40㎡ 초과 ~ 50㎡ 이하	임대주택의 40~50%	68세대(44.4%)	50㎡ 초과 ~ 60㎡ 이하	임대주택의 10~20%	16세대(10.5%)	계		153세대(100.0%)
건 립 규 모	기 준	세 대 수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-	1,017 세대 (100.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이하	건립세대수 80%이상	578 세대 (56.8%) : A	증가용적률 제외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초과	건립세대수 20%미만	63 세대 (6.2%) : B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60㎡이하	증가용적률 100%	376 세대(37.0%) : C	증가용적률 21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립규모	기준	세대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㎡ 이하	임대주택의 40~50%	69세대(45.1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㎡ 초과 ~ 50㎡ 이하	임대주택의 40~50%	68세대(44.4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㎡ 초과 ~ 60㎡ 이하	임대주택의 10~20%	16세대(10.5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153세대(100.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▶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들에 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【변경】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획지구분		위치	주단용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층수)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	
강북구 미아 제3 주택 재개발 정비구 역	49,187.8	획지1	26,409.2	791-3253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33.26 이하	73m이하	
		획지2	13,740.2	791-664번지 일대					
		획지3	4,182.9	762-10번지 일대					
		획지4	677.7	762-63번지 일대					
		획지5	1,625.6	762-62번지 일대	종교시설	60이하	233.26 이하	12층 이하	
		획지6	0.0	791-777번지 일대					
		획지7	445.2	226-74번지 일대					
		획지8	543.0	762-18번지 일대					
		획지9	673.0	791-687번지 일대					
		획지10	891.0	762-19번지 일대	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	60이하	233.26 이하	12층 이하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	▶ 주택공급계획 : 1,076세대 ▶ 건립규모								
	건 립 규 모		기 준		세 대 수		비고		
	계		-		1,076 세대 (100.0%)				
	전용면적 85㎡이하		건립세대수 80%이상		67 세대 (6.23%) : A		증가용적률 제외분		
	전용면적 85㎡초과		건립세대수 20%미만		426 세대 (39.59%) : B				
	전용면적 60㎡이하		증가용적률 100%		583 세대 (54.18%) : C		증가용적률 15.62%		
	※ 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 최소 세대수(D) = (증가용적률 × 대지면적) ÷ {1세대×(전용면적 + 주거공용) 면적} = D < C = (0.1562 × 45,010.00㎡) ÷ (80.36㎡) = 88세대 < 583세대 : 요건 충족 (최소세대수) (증가용적률분)								
	▶ 임대주택 건설계획 - 총세대수의 15% 이상 - 162세대(15.05%)								
	건립규모		기준		세대수				
	40㎡ 이하		임대주택의 40~50%		75세대(46.3%)				
40㎡ 초과 ~ 50㎡ 이하		임대주택의 40~50%		77세대(47.5%)					
50㎡ 초과 ~ 60㎡ 이하		임대주택의 10~20%		10세대(6.2%)					
계				162세대(100.0%)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▶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들에 의한								

3)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(변경)

【기정】

- 국공유지 무상양도

구분		산정값	비고
①구역면적		59,489.90	
②사유지		47,871.05	
국공유지	③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	2,003.8	
	④용도폐지(무상양여)	5,505.0	
기타		⑤건축법상도로확폭 제외 : 87㎡	
		⑥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: 1,047.75㎡	-주민센터(동청사)건축물기부채납
새로이설치 하는 공공용지	⑦ 소계	9,619.8㎡	
	도로	6,619.1㎡	
	공원	3,000.7㎡	
⑧ 용적률인센티브적용 용지		3,071.75㎡	⑦-③-④-⑤+⑥

- 용적률 산정

구분	산정내용					
토지이용 계획	계 (구역면적)	획지	계획 정비기반시설 (건축법상도로확폭 제외 : 87㎡)	계획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	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	주민센터 환산부지면적
	59,489.9㎡	49,870.1㎡	9,532.8㎡	2,003.8㎡	5,505.0㎡	1,047.75㎡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▶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+ 주민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= 9,532.8㎡ - 2,003.8㎡ - 5,505.0㎡ + 1,047.75 = 3,071.75㎡					
계획(기준) 용적률	▶ 계획(기준)용적률 190% → 210% 변경 : 「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60㎡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% 적용					
개발가능용 적률 산정	▶ 기존 계획용적률 적용시 (190%) = 허용용적률+계획(기준)용적률×1.3α = 190% + (190% × 1.3 × 0.0628) = 205.51% (A) ▶ 상향된 계획용적률 적용시 (190% → 210%) = 210% + (210% × 1.3 × 0.0628) = 227.14% {건축계획 226.51%(B)} ▶ 증가용적률(B-A) = 226.51%-205.51%= 21.00 %					

【변경】

- 국공유지 무상양도

구분		산정값	비고
①구역면적		59,489.9㎡	
②사유지		47,871.05㎡	
국공유지	③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	2,051.2㎡	
	④용도폐지(무상양여)	5,446.6㎡	
기타		⑤ 건축법상도로확폭 제외 : 87㎡	
		⑥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: 1,363.72㎡	주민센터(동청사)건축물기부채납
새로이설치 하는 공공용지	⑦ 소계	10,302.1㎡	
	도로	6,938.3㎡	
	공원	3,363.8㎡	
⑧ 용적률인센티브적용 용지		4,081.02㎡	⑦-③-④-⑤+⑥

- 용적률 산정

구분	산정내용					
토지이용 계획	계 (구역면적)	획지	계획 정비기반시설 (건축법상도로확폭 제외 : 87㎡)	계획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	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	주민센터 환산부지면적
	59,489.9㎡	49,187.8㎡	10,215.1㎡	2,051.2㎡	5,446.6㎡	1,363.72㎡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▶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+ 주민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= 10,215.1㎡ - 2,051.2㎡ - 5,446.6㎡ + 1,363.72㎡ = 4,081.02㎡					
계획(기준) 용적률	▶ 계획(기준)용적률 190% → 210% 변경 : 「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60㎡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% 적용					
개발가능용 적률 산정	▶ 기존 계획용적률 적용시 (190%) = 허용용적률+계획(기준)용적률×1.3α = 190% + (190% × 1.3 × 0.08517) = 211.04% (A) ▶ 상향된 계획용적률 적용시 (190% → 210%) = 210% + (210% × 1.3 × 0.08517) = 233.26% {건축계획 226.66%(B)} ▶ 증가용적률(B-A) = 226.66%-211.04%= 15.62 %					

-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(변경)

구분	전용면적	공급면적	대지면적	증가용적률	비고
소형주택 건설계획	60㎡이하	80.36㎡	45,010.0㎡	15.62% (226.66%~211.04%)	
	• 연면적 = 증가용적률 × 대지면적 = 15.62% × 45,010.00㎡ = 7,030.56㎡ 이상 • 세대수 = 연면적 / 공급면적 = 7,030.56㎡ / 80.36㎡ = 88세대 이상 (계획 : 583세대)				

아.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)

구분	시행 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
기정	관리 처분 방법	구역지정(변경)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감) 465세대 (현황 : 1,482세대 계획 : 1,017세대)	해당없음
변경	관리 처분 방법	구역지정(변경)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감) 406세대 (현황 : 1,482세대 계획 : 1,076세대)	해당없음

자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가 구	획 지				비 고	
		위 치	면 적(㎡)		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획지 계획	획 지 1	791-3253 번지 일대	26,578.2	감) 169.0	26,409.2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	획 지 2	791-664 번지 일대	12,766.2	증) 974.0	13,740.2		
	획 지 3	762-10 번지 일대	4,182.9	-	4,182.9		
	획 지 4	762-63 번지 일대	1,191.0	감) 513.3	677.7		
	획 지 5	233-62 번지 일대	1,625.6	-	1,625.6	종교시설	
	획 지 6	791-777 번지 일대	1,018.0	감) 1,018.0	0.00		
	획 지 7	226-74 번지 일대	445.2	-	445.2		
	획 지 8	762-18 번지 일대	543.0	-	543.0		
	획 지 9	791-687 번지 일대	629.0	증) 44.0	673.0		
	획 지 10	762-19 번지 일대	891.0	-	891.0		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
	합계		49,870.1	감) 682.3	49,187.8		-

차.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(변경)

구분	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동수(동)	연면적(㎡)	세대수	세대규모(전용)		비 고
변경	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	59,489.9	3 [15]	13,478.66 [152,958.29]	162 [1,076]	38.717 A	62	
						38.717 B	13	
						42.645 A	62	
						42.715 B	15	
						51.353 A	5	
						51.353 B	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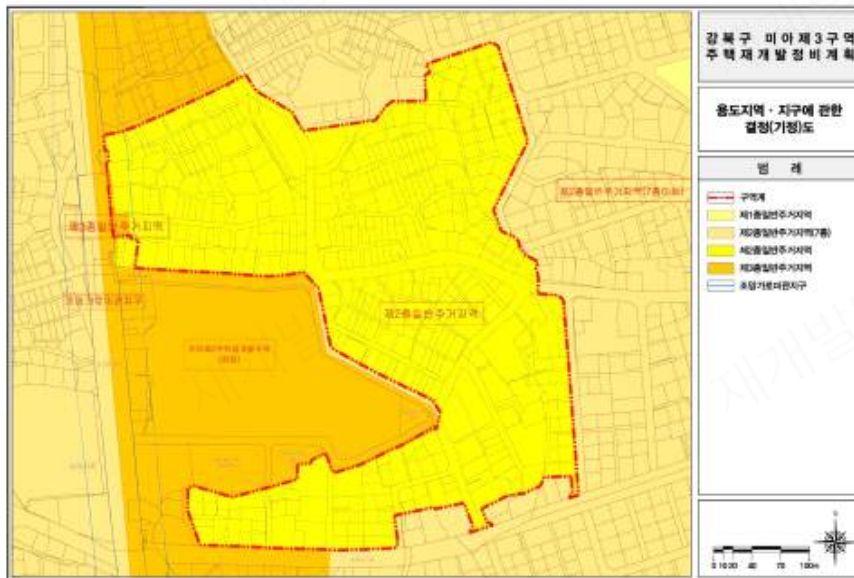
3. 관련도면 :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(붙임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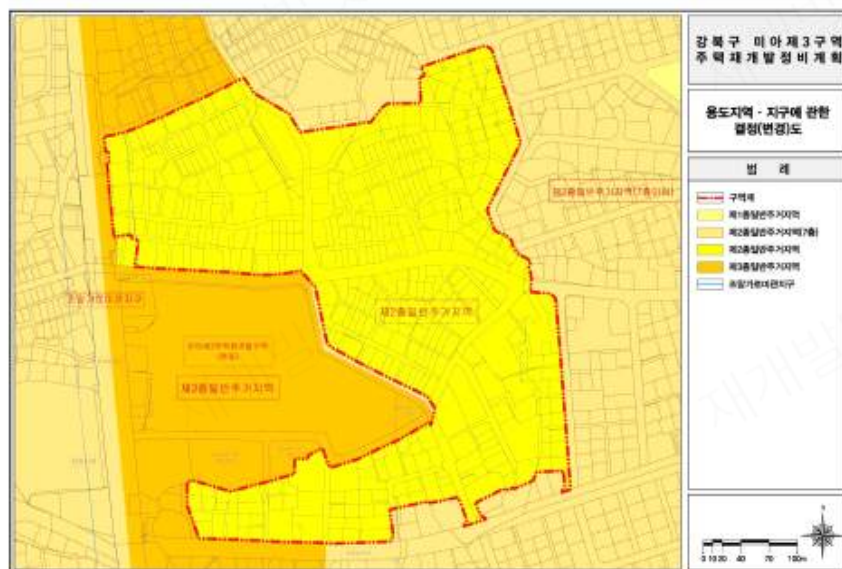
4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택과 (☎ 901-6822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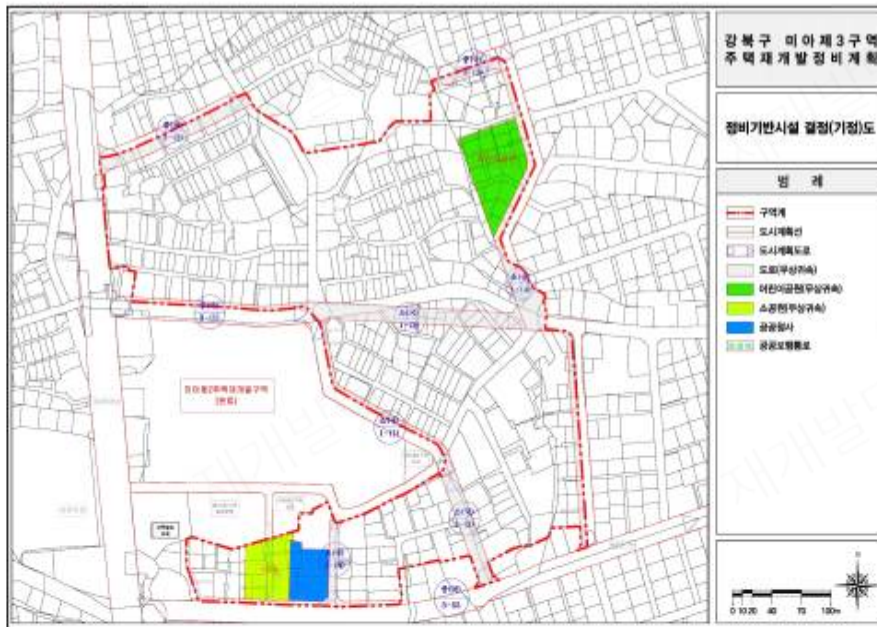
• 용도지역-용도지구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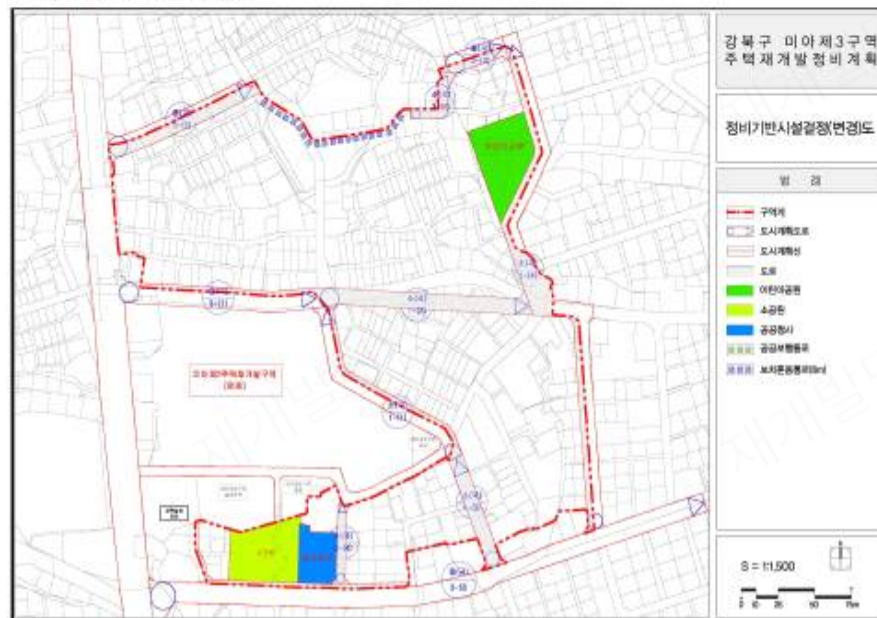
• 용도지역-용도지구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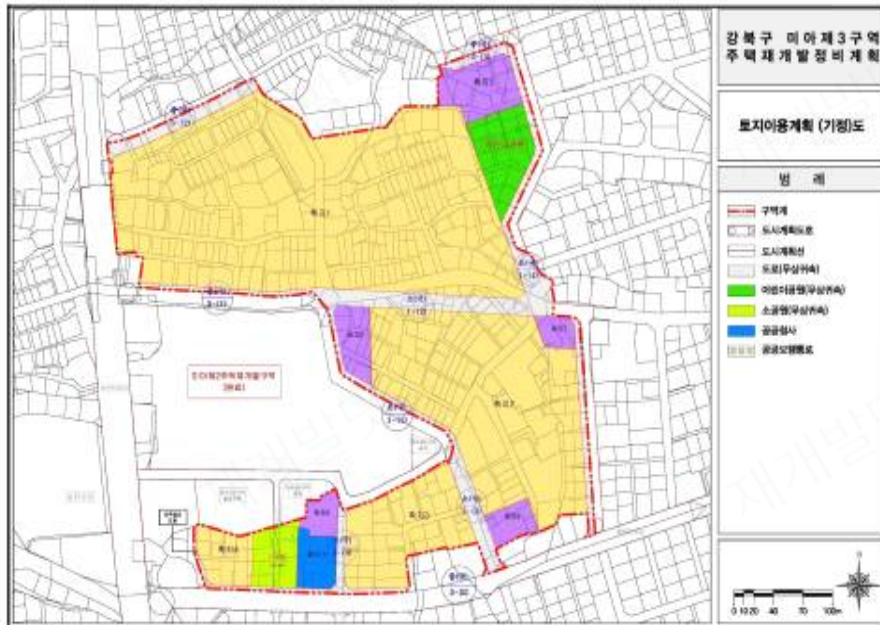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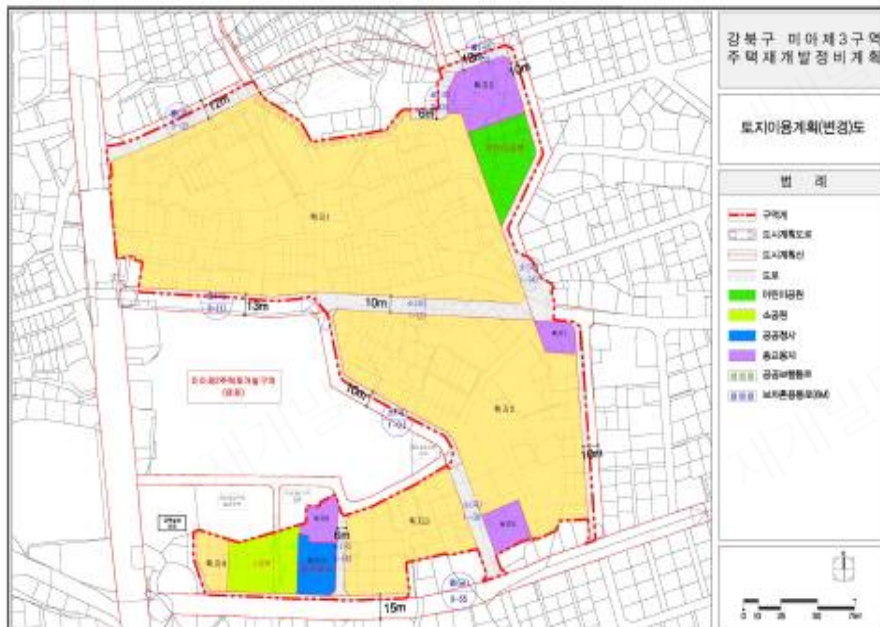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가정)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



구 의 회

◎ 공고 제2018-31 호

**제2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
임시회 집회공고**

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1. 일 시 : 2018년 11월 12일(월) 10:00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(3층)

2018년 11월 7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

기 타

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임용

(발령 제2018-226호)

강북구청장

성명	발령 사항	현 직	
		부서(직위)	직 급
나 윤 미	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에 임 함	송 중 동	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

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인사발령(육아휴직)

(발령 제2018-231호)

강북구청장

성명	발령 사항	현 직	
		부서(직위)	직 급
최 규 철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(육아)을 명함【기간: 2018.11.05.~2019.11.04.】	공 원 녹 지 과	지 방 녹 지 주 사 보

6급 기술직공무원 인사발령(겸임)

(발령 제2018-232호)

시행일: 2018. 11. 01.

강북구청장

직급	성명	업무분장			
		당초		변경	
지방행정주사	정 소 연	복지정책과	복지자원팀장	복 지 정책과	복지기획팀장 겸 임

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

(발령 제2018-233호)

시행일: 2018. 11. 5.

강북구청장

직급	성명	업무분장			
		당초		변경	
지방행정주사	한 경 아	재 무 과	지 출 팀 장	재 무 과	금고이관T/F 팀 장 겸 임

성명	발령 사항	현 직	
		부서(직위)	직 급
신 승 희	기획재정국 재무과 지원근무를 명함 (2018.11.5. ~ 별도 명령시까지)	인 수 동	지 방 행 정 주 사 보
송 진 욱	기획재정국 재무과 지원근무를 명함 (2018.11.5. ~ 별도 명령시까지)	번 제 3 동	지방행정서기

일반임기제공무원 인사발령(육아휴직)

(발령 제2018-234호)

강북구청장

성명	발령 사항	현 직	
		부서(직위)	직 급
김 은 이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(육아)을 명함【기간: 2018.11.08.~2018.12.16.】	홍 보 담 당 관	임 기 제 지 방 행 정 서 기 (홍보물문안 편 집 요 원)